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술료 명칭 현실화〉

■ 이상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081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 명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기술료 명칭 현실화(안 제17조제2항제4호)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상회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2. 12.

다. 회부연월일 : 2025. 2.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주항공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술료’를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면서,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대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정부납부 기술료’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는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실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료’의 의미와 달라 용어상 혼란 및 법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를 의미하는 용어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4호).

Ⅲ. 검토의견

1. 기술료 명칭 현실화(안 제17조제2항제4호)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의미하는 기술료는 “정부납부기술료”에 해당하지만 현행법의 정의와 다소 상이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① (생략)	제17조(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u>기술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의 기술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u>	4.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
5. ~ 8.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우주항공기금의 재원 중 하나인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¹⁾의 기술료”로 규정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²⁾의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임.

□ 개정안은 현행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가 의미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³⁾에서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는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

-
-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②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은 동법 제2조제9호의 기술료와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규정된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의 기술료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도 포함되는 개념임.

□ 이에 따라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재원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로 규정할 경우, 법문언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률 해석에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우주항공청도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재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술료’ 용어의 명확화를 통해 법적 혼선을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정부납부기술료” 용어를 신설하려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43,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해당 개정안은 “정부납부기술료”를 신설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서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로 정의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236